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보상연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요양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종결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를 받은 후 당초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로 인해 요양하는 것이므로 재요양기간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기간이므로 휴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중 재해를 입어 요양중인 것과는 달리 재요양기간 중에는 다시 상병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므로 장애급여 지급사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요양 종결 시까지는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 (031-877-7582-3)

Q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가 재취업 후 다른 재해를 당한 경우의 보험급여지급 여부.

A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새로이 피재되어 요양하게 된 경우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과의 관계에 대해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피재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장해

급여(연금, 일시금)는 요양 종결 후 잔존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양급여의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 상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최초의 상병과 무관하므로 각각의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볼므로 양급여 모두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재요양시 휴업급여와 장해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주고 신경과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나 신경질적인 사람, 급하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흑미, 검은 콩, 검은 깨 등의 검은색은 수(水)에 속하며 신장의 기능을 돕는다. 그동안 검은색 음식은 식탁을 장식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멀리해왔으나 기운을 솟아나게 하는 천연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검은색의 색소 성분에는 포함되어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우리 몸에 항산화 능력을 길러 주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며 노화를 지연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레드와인, 토마토, 붉은 고추 등의 붉은색 음식(火)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하며, 간장의 기능을 좋게 한다.

☞의정부한방병원(031-820-7200) www.ujhanbang.co.kr

오색과 오장(五臟)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등을 보면 여러 가지 고유의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다. 예부터 한의학에서는 음식의 다섯 가지 색상을 인체의 다섯 장기와 연관해 음식과 건강과의 관계를 강조해왔다.

우리가 몸속의 장기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오장육부의 건강은 몸 색깔에 보이는 증상으로 상태를 알 수 있다. 일례로 얼굴에서 눈이 침침하고 피곤

해 보이면 간의 건강을 살펴야 하고, 얼굴의 색이 붉으면 심장이 좋지 않은 경우이고, 얼굴색이 검어지면 신장에 이상이 생긴 것이고, 하얗다면 폐가 나쁘다는 것이다. 따뜻한 기운이 땅위에 가득한 봄의 색인 녹색은 목(木)에 해당하며, 간장의 기능을 좋게 한다.

녹차를 필두로 매실, 브로콜리, 시금치 등 녹색음식은 시각적인 안정을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산부인과 과장 강희석



며 순수하게 복잡성 요실금만 있는 경우는 약 25%를 차지한다.

치료는 크게 약물이나 골반운동, 전기자극과 같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치료의 선택에 있어서 절박성 요실금과 복잡성 요실금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진단에 따라 요실금의 치료방법이 다른데, 복잡성 요실금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수술이지만 요실금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비교적 젊은 여성에게는 골반근육운동이나 전기자극을 이용한 바이오피드백 요법도 효과적이다. 반면에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보다는 약물투여와 방광훈련이 주된 치료가 된다.

포천의료원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시술되며 부작용도 적은 TOT(transobturator tape)수술을 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요실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포천의료원 (031-539-9114)

요실금-下

절박성 요실금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는데 참을 수 없어 화장실에 가는 도중이나 미처 속옷을 내리기도 전에 소변이 흘러 나오는 경우를 말하며 전체 요실금의 10~20%를 차지한다. 급성방광염, 신경질환, 당뇨병, 방광출구폐색과 같은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질병과 동반되지 않고 생기기도 한다.

절박성 요실금을 일으킬 수 있는 신

경질환은 뇌졸중, 척추 손상, 파킨슨씨병, 다발성 경화증이 대표적이며 방광과 요도를 지배하는 대뇌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어떠한 질병도 절박성 요실금을 유발 할 수 있다.

여성들에게는 복잡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전체 요실금의 약 50%가 복잡성 요실금에 해당되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있는 것에 의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2.4.14. 92다169).

따라서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증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공증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약속어음은甲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어서(대법원 1990.5.22. 89다카13322), 원원채권, 즉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어음채권과 병존하게 되고,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甲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속히 가압류 등의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031-874-1652)

Q 저는 甲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이자는 월2%, 변제기일은 10개월 후로 하는 차용증서를 교부 받았으나, 甲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아 액면금 500만원에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는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다시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의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에게 甲이 20평 아파트를 상속 받았으므로, 이를 강제집행하려고 하니 위 약속어음공증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약속어음공증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어음법 제77조, 제70조). 그런데 약속어음공증증서는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과 같이 일종의 채무명의가 되므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의 경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비록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나, 공증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판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례도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소양감, 자결감 및 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질염의 다양한 증상들을 보면 냉 색깔이 진하고 고름처럼 흐릅니다. 악취가 나고, (생선비린내...) 질 입구가 가렵고 화끈거립니다. 성교 시 질 자극으로 통증이 있고, 소변 시 쓰러린 느낌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냉 대하증으로 평소와 다르게 팬티가 젖을 정도로 질 분비물이 늘어납니다.

질염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항생제를 복용 하는 경우에 정상 세균 파괴됨으로서, 피염을 위해 자궁 내 장치를 삽입한 경우 : 장치로 인해 감염이 가능하고, 과다하게 질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정상 세균 파괴되고,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에 질 내부를 더욱 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해로운 세균 배양 만들어집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소변의 당으로 인해 세균과 곰팡이 감염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몇몇 질염은 성관계로 인해 전염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질염의 증상과 요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질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질염은 산부인과 질환 중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흔한 만큼 종류도 다양합니다. 질염에 대한 각종 궁금점을 4회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염은 방대하 또는 성병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물론 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이 냉·대하증이지만, 질염 외에도 자궁 경부염이나 자궁경부의 폴립(살혹)이 있을 경우에도 대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염에 걸리게 되면 질 입구의 가려움증

이나 화끈거림, 성교시 질의 자극으로 인한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염을 모두 성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질염 중에서 성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밖에 명확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서식하는 균의 균형이 깨져 발생하는 질염도 있고, 폐경 이후 호르몬이 부족해 생기는 질염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질 분비물이란 질 세포사이의 조직액, 자궁 경부의 점액, 자궁 내막 및 나팔관에서 나오는 액체 등이 합쳐진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질 분비물은 흰색으로 냄새가 없으며 쉽게 묻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냄새가 나지않고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자본인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부간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3억원 공제가 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Q 이혼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내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본인소유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A 1.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

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 세금 없음

민법 제 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 고속 관광'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 효도관광 -신혼여행 -수학여행 -문화재답사

